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www.ableservice.or.kr

## 2013년 달라지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 신청자격이 장애 2급까지 확대됩니다.
- 아동급여시간이 대폭 확대됩니다.
- 독거(1인가구) 등 추가급여의 월 한도액이 확대됩니다.
  - 소득수준과 급여량에 따라 본인부담금에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가족 등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여 활동지원이 더 필요할 경우 추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활동보조 급여비용(심야, 공휴일 포함)이 인상되며, 농어촌 지역에 대한 원거리 교통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세부내용은 각 소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 1.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2급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표와 표사이에 연관 이미지 삽입)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세요

### 신청일시는?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장소는?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는?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참서류

1. 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환급용)
  2. 건강보험증
-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작성 서류(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 3. 수급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표와 표사이에 연관 이미지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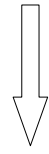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장애등급심사

07년 4월1일 이전에 장애등록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07년 4월1일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1,2급을 받은 분은 심사 제외



###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



### 수급자격 심의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 결간통지

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정결과 통지

### 장애등급심사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드리고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의소견서, 진료기록지 등 심사서류가 필요하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먼저 심사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의신청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청(방문·우편·팩스 등)

## 4.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표와 표사이에 연관 이미지 삽입)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 매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월 한도액)

월한도액 = 기본급여 + 추가급여

기본급여 : 활동지원 등급별로 지원

활동지원등급	기본급여액(시간)
1등급	88만 6천원(약103시간)
2등급	71만 1천원(약83시간)
3등급	53만 6천원(약62시간)
4등급	36만 1천원(약42시간)

추가급여 :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해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 지원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	추가급여액(시간)
활동지원수급자 1인가구 (독거)	중증도에 따라 68만 4천원(80시간) 또는 17만 1천원(20시간)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증도에 따라 68만 4천원(80시간) 또는 17만 1천원(20시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8만 4천원(80시간)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7만 1천원(20시간)
직장, 학교에 다니는 경우	8만 6천원(10시간)
<신설>가족(실질적 보호자)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7만 1천원(20시간)

※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낮에 활동보조만을 이용한 경우(시간 단당가 : 8,550원) 산정시간이며, 심야 및 공휴일의 활동보조나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할 경우 이용시간은 줄어들

## 5. 본인부담금은 무엇이고 얼마나 되나요?

(표와 표사이에 연관 이미지 삽입)

본인부담금이란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 합니다.

< 기본급여 >

구분	4등급 (36만1천원)	3등급 (53만6천원)	2등급 (71만1천원)	1등급 (88만6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19만원이하)	21,600	32,100	42,600
	100%이하 (438만원이하)	32,400	48,200	63,900
	150%이하 (658만원이하)	43,300	64,300	85,300
	150%초과 (658만원이하)	54,100	80,400	94,500

※ '12년도 4인가구 기준

< 추가급여 >

구분	8만6천원	17만1천원	68만4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면제	면제	면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19만원이하)	1,700	3,400
	100%이하 (438만원이하)	2,500	5,100
	150%이하 (658만원이하)	3,400	6,800
	150%초과 (658만원이하)	4,300	8,500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월 1회 매월 말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입금하실 계좌는 시군구청에서 안내해드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 입금방법 : 자동이체,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 등

## 6. 활동지원급여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표와 표사이에 연관 이미지 삽입)

1.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 활동지원기관 정보는 시군구청에서 보내드린 안내문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http://www.ableservice.or.kr))에서 확인
2. 서비스 내용, 이용일자나 시간 등에 대하여 활동지원기관과 서비스 급여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 상담내용에 따라 '월별일정표', '서비스 제공계획서' 함께 작성
3. 계약 체결 후 '월별일정표'와 '서비스 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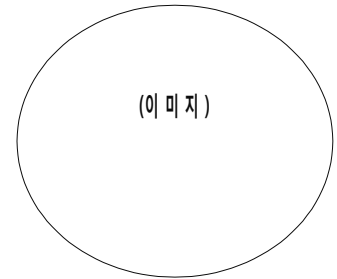
### 급여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급여제공기관과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과 판단을 존중받으며, 이용자는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음
2. 이용자 및 그 가족은 활동보조인을 존중하여야 하고 욕설, 폭력이나 성적 불쾌감(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 등을 주는 행동은 금지됨
3.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이용자 본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만 요청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할 수 없음
  - 가.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 나. 이용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가족의 빨래 또는 식사준비, 집안 대청소, 김치 담그기 등)
  - 다.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에 대한 지원 등

4. 급여 이용기간 중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지자체에 알려주세요

- 가. 신청자격관련 : 30일 이상의 의료기관 입원, 보장시설 입소, 가사간병서비스 등 유사서비스 이용
- 나. 추가급여관련 : 1인 가구 여부, 출산, 학교생활, 직장생활, 시설퇴소, 보호자 일시부재 등 추가급여 사유의 변경
- 다. 본인부담금관련 : 건강보험료의 변경, 기초생활·차상위 지정 및 해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하세요?(말풍선)



(이미지)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홈페이지 [www.ableservice.or.kr](http://www.ableservice.or.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M.I, 국민연금관리공단 M.I